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1. 위촉예정직위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2. 선발인원 : 총 5명 (경영/회계, 수자원, 공공행정, 품질/연구분야)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4. 담당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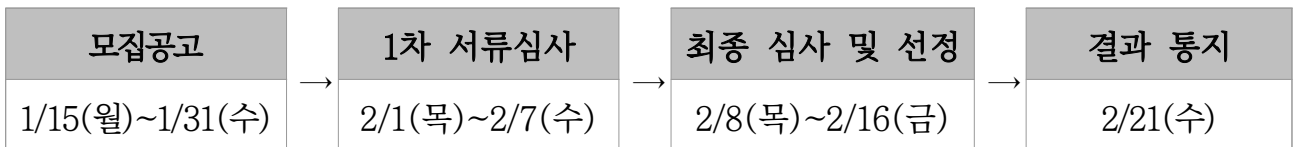
- 가. 연구용역 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 나. 연구용역 과제 결과물 활용가능성 및 활용계획의 명확성 심의
- 다. 예산 규모 및 계약체결 방식의 적정성 심의
- 라. 연구용역 과제의 중요 부분 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 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
- 사. 그 밖에 연구용역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5. **응모자격**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종 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제한 없음

※ **결격사유**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7. 정당의 단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8.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9.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에 있는 자 |
|---|

6. **심사 및 위촉절차**



- ※ 심사 일정은 접수인원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후보자 선정 및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 접수 및 심사 결과 합격 인원이 모집 인원에 미달될 경우 추가로 공모를 실시 할 수 있음

7. **보수** :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지급

8. 공고 및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 15.(월) ~ 1. 31.(수) 18:00까지

※ 근무시간(09:00 ~ 18:00) 내 접수, 공휴일·토·일요일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2층 기획조정팀

다. 제출서류 [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 (소정양식 기재, 사진부착)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 기재)

◦ 결격사유 확인서 1부 (소정양식 기재)

◦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해당 경우에만 제출)

※ 위 제출서류 소정양식은 공고문 본문 및 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

「공지사항」 공고 게시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9. 결과 통지 : 개별통지

10.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접수자 책임으로 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 되는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되고, 향후 5년 간 공사의 모든 선발 (위촉) 관련 모집에 응할 수 없음

나.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촉권자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음

다.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인정 (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기획조정팀(☎064-780-3505, 5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지 원 서

공모 직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	--------------------------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	[주택]() -	휴대폰	
			[직장]() -		
E-mail					

학력 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 재 지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사항	근 무 처	직 위	기 간	주요업무내역
			~	<i>주요업무, 논문, 연구내역 등</i>
			~	
			~	

지원
동기
및
자기
소개

연구
용역
심의
위원회
수행
계획서

※ 결격사유 관련 참고 자료

1. 「국가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심사표

A-000

성명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점수				
			탁월 (S)	우수 (A)	보통 (B)	미흡 (C)	저조 (D)
전문성	• 연구용역 분야 관련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50점	50	45	40	35	30
수행 능력	• 연구용역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 및 개선점 발굴, 대안제시 역량	20점	20	16	12	8	4
	• 공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과 태도	10점	10	8	6	4	2
이해도	• 연구용역심의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인식	20점	20	16	12	8	4
	합 계		점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2024년 월 일

심사자:

(서명)